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 양국의 대응

— 녹둔도를 중심으로 —

沈 憲 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러시아 대외팽창의 군사전략과 극동진출
3. 조·러간 국경획정과 조선의 대응
4.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과 영토주권 강화 활동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개정을 통한 과거사 재평가 기도 등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갈등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인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고

구려의 역사와 유물을 자신들의 역사로 치부하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시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구축된 전후 질서의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벌인 전쟁과 식민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기저에는 자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대상국에게 단순한 외교마찰을 넘어 민족적 위기의식 내지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벌이고 있는 과거사 재평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 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파장의 여파는 직접적으로 한 국가 고유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주권적 침해로 이어졌다. 즉 중국은 향후 통일한국이 제기할 수도 있는 동북지역(간도)에 대한 역사적, 주권적 문제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지작업 차원에서 고대사를 재해석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및 동해 해역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은 영토와 역사에 대한 지리한 주권 논쟁에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다분한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동북아 국가간에 제기된 문제는 결코 현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지렛대로 미래의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형상이다.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나 간도나 녹둔도는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귀속되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사업을 추진하여 한·중간 과거사와 영토에 대한 현안을 부각시켜 놓은 반면 한·러간에는 표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동북지역의 고대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자 러시아 학자들은 이에 반대를 하며 한국측 입장에 동조하기도 하였다.¹⁾

물론 한·러간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두만강 경계지역에 대한 국경협

1) 러시아의 한국학 대가들인 미하일 박, 유리 바닌, 로자 좌를가시노바 그리고 바질 트카첸코 등은 고구려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한민족의 국가라며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을 추진하는 대국주의적 왜곡을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러시아 사학자들, 中 ‘고구려사 왜곡’ 규탄”, 조선일보, 2003년 12월 24일.

상은 1990년 9월 조·소 외무장관이 “조·소 국경형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소련과 조선 그리고 중국의 국경이 교차하는 두만강의 중간에 있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이 강바닥의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강구의 지점”까지를 국경선으로 정했던 것이다.²⁾

그러나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85년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이면서, 과연 북한이 두만강 국경설정의 역사적 의미와 일련의 국경조약에 대하여 얼마나 주권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했는가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³⁾ 왜냐하면 소련과의 국경협상 결과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 대한 역사주권, 녹둔도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동시에 넘겨준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한·러간의 영토문제도 언젠가는 표면으로 드러날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러간 영토문제로서 연해주 내지 녹둔도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간도나 특히 독도문제처럼 양국의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복된 현안으로서 한·러간의 영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극동진출, 특히 흑룡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으로의 남진과정을 역사적 시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청국에게 국경조약을 강압하여 영토확장을 거듭해 왔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극동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양탐사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영토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한 조선이 그 후 상실된 영토를 회복하고자 시도했던 대응 노력을 아울러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노계현, 『조선의 영토』(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108-109쪽.

3) 『위의 글』, 110쪽.

2. 러시아 대외팽창의 군사전략과 극동진출

(1) 영토확장의 군사적 성격과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는 역사상 '지리상의 발견'이 한창이던 시대에, 더 자세히는 17세기 초 표트르 대제 통치기에, 이미 시베리아나 극동의 광활한 지역으로 영토확장을 이루어냈다. 다른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개척한 것과 달리 유라시아의 북부 내륙에 둘러싸인 러시아는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를 탈출이라도 하려는 듯 동쪽 대륙으로 계속 진출해 나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러시아는 다른 제국이 해양을 통해 다다른 것보다 오히려 빨리 극동지역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점유하고 계절과 관계없이 바다로 항할 수 있는 부동항을 개척해 나갔다.

러시아가 지금과 같이 방대한 영토를 급속도로 확보할 수 있었던 동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대체로 '국가 지도층의 취약함과 불안이 외부로 확대'되거나 혹은 '외부의 침략에 대항한 방어적 팽창'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⁴⁾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은 러시아민족이 외부로의 팽창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자연지형이 주는 이점을 군사적으로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 있다.⁵⁾

러시아 민족은 하천과 바다를 통한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우랄산맥과

4) 러시아 국가가 침략적 의도나 외교수단으로서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에 의존한 것은 국가 내부의 취약성에 기인하기도 하며 국가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Gabriel Kolko, *The Politics of War*(New York:Random House, 1968); J. L.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New York:Columbia Univ. Press, 1972).

5) 줄고, "러시아 동진의 군사적 성격과 통치구조", 『중소연구』 제27권 2호, 2003, 152-153쪽.

시베리아의 험준한 자연지형을 극복해 나갔다. 시베리아 주요 하천인 오피(Обь), 예니세이(Енисей), 레나(Лена)강은 연수육로(連水陸路)로 연결되었고 그 하천의 연장선에 바다가 존재하여 있었으므로 그 곳까지 군수물자와 식량을 수송, 보급하는 데에 하천과 하천을 연결한 연륙도가 매우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민족은 점령지역을 잘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거점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하천 유역에 성채를 쌓고 경비를 강화함으로써 그 지역은 또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었다. 오피강의 토볼스크와 이르티쉬, 예니세이강의 예니세이스크나 꾸즈네츠 그리고 레나강의 네프친스크, 일름스크, 이꾸츠크 요새 등은 그러한 거점으로 조성되었다.⁶⁾

러시아가 해상무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하천의 중요 유역이나 항구를 장악하는데 필수적이었던 거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연환경 때문이었다. 동토에 가까운 북방지역으로부터 전천후 무역과 원활한 군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전략적 거점지로서의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상-페테르스부르크를 획득하기 위해 스웨덴과 오랜 북방전쟁을, 흑해의 제 항구를 얻기 위해 남부 터키 민족과 지난한 전쟁을 감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방에서의 부동항 개척은 광활한 극동시베리아 대륙만큼이나 견고한 극동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과의 전쟁으로 그리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승승장구하던 러시아의 동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17세기 중반 극동의 아무르강 유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나선정벌(羅禪征伐)’ 사건으로서이다. 러시아 까자크(Казак) 원정대가 아무르강에 출몰하였으나 조·청 연합군에 의해 격퇴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원정군은 청군과 연합하여 영고탑(寧古塔), 하바로프스크 일대에서 스제관을 대장으로 하는 러시아 원정부대를 물리쳤다.⁷⁾ 이로써 아무르강 중·하류를 따라 중국 내륙으로 남하하려던 러시아

6) 『위의 글』, 154-155쪽.

의 원정 기도는 전투에 패함으로써 더 이상 남하할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그 후 러시아가 아무르강 상류지역을 통한 육로 통상루트를 개척하려 시베리아 남부의 군사지리적 요충지인 알바진(Албазин) 요새를 공격하여 확보하였다. 러시아의 공세를 더 이상 막아낼 여력이 없었던 중국은 1689년 8월 27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러시아와의 육로 통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화해하게 된다. 국경문제와 관련한 조약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

제1조, 흑룡강 지류인 쉘까강으로 합류하는 고르비차(Горбича, 格爾必齊河)(그 근처에는 쉘까강으로 합류하는 초르나야(Чёрная) 하천이 합류한다. - 필지주) 및 스타노보이산맥을 청·러 양국의 경계로 하고 산남 흑룡강으로 유입하는 계하(溪河)는 청에 속하며 산북은 러시아에 속한다. 제2조, 아르군(Аргунь, 額爾古納河)로 타 일방의 청·러 양국의 경계로 하여 우안은 청에 속하며 좌안은 러시아에 속한다. 제3조, 쉘까강과 아르군강이 합류하는 북방 우르카(Урка, 烏特河) 일대를 보유하여 중립지대로 한다.

청국은 아무르강 유역에서의 전투와 알바진 요새 공방전 이래 러시아와

7) 나선정벌에 대한 기록은 한국(신유, 『北征日記』, 『國譯 北征日記』(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1-107쪽; 『同文彙考』, 原編, 卷76, 軍務 報捷音咨·禮部回咨)과 러시아(17세기 러·청 관계자료집 제1권 제99호(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I в.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Т. 1(1608-1683) No. 99))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선구적인 국내·외 연구는 박태근(『해설』, 『國譯 北征日記』)과 심비르체바(Т. М. Симбирцева, 1997, “Некоторые оцен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сториографами характер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XIX веке”, 100 лет петербургскому корееведению, (СП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나선정벌로 인해 러시아 동진 과정이 제동당했다는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줄고,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66-67쪽을 들 수 있다.

8) 김경춘, 『두만강 하류의 Korea Irredenta에 관한 일고』, 『백산학보』 30·31호 합본, 1985, 177쪽. 네르친스크 조약이 맺어지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1780년 당시 발간한 코호(W. Coxe)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W. Coxe, *Account to Russian Discoveries between Asia and America*(New York: Augustus M. Kelly Publishers, 1970), p. 301.

화친함으로써 국경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청·러 양국은 양국의 국경을 오희츠크해에서 아무르강 북쪽으로 뺀 산맥을 경계로 하며, 아이훈강과 설까강을 잇는 지역으로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더 이상의 육로 혹은 수상로를 이용한 내륙 교통로를 차단당한 채 더 이상 남진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는 네르친스크(Нерчинск)와 후일 1727년 10월 추가로 개방된 카흐타(Кяхта)라는 두 국경도시로 제한된 러·청무역에 200여 년간 만족해야만 했다.⁹⁾

(2) 아무르강 거점 확보와 연해주 복속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으로의 남진을 꾀한 것은 19세기 중반 니콜라이 1세 통치기 때이다. 비록 그는 러터전쟁으로 인하여 대외정책의 관심을 남부지역에 집중시켰으나, 1854년 적극적인 동방진출 전략을 추진한 무라비요프(Н. И. Муравьев)를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아무르강 좌안과 하구를 장악하는 자가 시베리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남진을 향한 교통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지역에서 동방전략을 위한 주요 거점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무라비요프는 해상을 통한 청·일과의 통상루트가 그들과의 수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척되지 않자 육로를 통한 남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1856년 청나라와의 통상을 위한 육상루트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니벨스코이(Г. И. Невельской) 원정대¹⁰⁾가 파견되었다. 이들은 오희츠크해를 돌아 아무르강 하구를 거쳐 상류로 향해 내려옴으로써 육로가 아

9) 네르친스크 조약 제5조에는 모든 양국 국민들에게 상호 무역상의 자유를 부여해 주며 공식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양국 통상절차를 엄격히 하였다. W. Сохе, *ibid.*

10) Г. И. Невельской,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 морских офицеров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1855* (Примиздат, 1950), с. 3.

닌 수상 루트를 따라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구획되었던 양국 국경 경계지역, 즉 흥안령과 스타노보이 산맥을 넘어 남하하는 교통로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연안에 거점을 마련하여 까자크 부대 2개 연대 및 기병대를 주둔시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영역의 확대를 꾀했다.¹¹⁾ 러시아 대외팽창의 전통적 군사전략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탐험가로서 니벨스코이는 영토문제에 유념하여 네르친스크 조약에 나타나는 지명이 지리적으로 실제 어디에 위치하는가의 해석 여하에 따라 국경선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¹²⁾ 네르친스크 조약 조문상에 나타난 지명들은 주로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정되므로 아무르강 하류나 연해주 일대는 주인 없는 땅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두만강까지를 러시아 영토로 선언할 것을 제안하였다.¹³⁾ 그리고 니벨스코이는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면서 당시 러시아 협상자인 콜로빈이 국경경계를 표시할 경계비를 후일에 설치하자¹⁴⁾고 하였기 때문에 조문에 나타난 지명을 재해석하여 그 지역을 명확히 한 후 국경을 설정하면 기존 조약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극동지역의 연해주 지역까지 확보할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탐험가 니벨스코이의 주장은 미묘한 외교관계 속에서 중국이나 영국과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기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마침내 1858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제독이자 백작인 뿌썬젠(Е. Путятин, 1804-1883)을 특사로 파견하여 기존 국경체제를 대체할 국경조약으로 아이훈 조약을 이끌어 내었다. 아이훈 조약 중 향후 체결되는 일련의 대중 국경조약의 기본이 되는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11) Л. Л. Рыбаковский, *Насел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150 лет*(М., Наука, 1990), с. 30.

12)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고구려연구재단 제4호, 2005, 59-61쪽.

13) Г. И. Невельской, *op. cit.*, pp. 186-194.

14) П. Т. Яковлева, *Первый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й договор 1689 г.*(М., 1958), с. 131-133.

제1조, 애훈강으로부터 흑룡강 하구에 이르는 좌안을 러시아령으로 하고 그 우안 우수리강에 이르기까지를 청령으로 한다. 우수리강에서 해안에 이르는 일대의 땅은 타일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공동관리지(共同管理地)로 한다. 淸·俄 양국은 흑룡강, 송화강 및 우수리강의 교통권을 갖는다. 단, 타국에 이 권리를 양여하지 못한다. 흑룡강의 좌안에서 제야(Зeya) 하구까지로부터 남방지역(약 36로리 사이 호르물진 마을)에 종래 거주했던 청국인은 의연 청국 정부의 관할을 받고 그 지역에 영주할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모욕과 강제는 행사하지 않는다. 제2조, 흑룡강, 송화강 및 우수리강에 있어서의 무역의 보호는 그 지방장관이 책임진다.”

러시아는 아무르강 하구 이남지역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아이훈 조약에 명문화시킴으로써 네르친스크 조약의 국경 ‘지역’을 국경 ‘선’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추가로 더 영토를 확장할 근거로서 공동관리지까지 획득하였다. 러시아는 명문화된 공동관리 지역을 추가로 완전히 할양받기 위하여 아무르강에서 우수리강을 남쪽으로 따라가 조선반도에 다다른 선을 청·러 양국의 국경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1858년 6월에 체결된 친진 조약에 청·러 양국간의 「미확정 지역의 현지조사」 조항을 삽입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미확정 국경지역에 대한 지체없는 현지 조사 결과 작성된 지도를 근거로 차후 국경문서로 삼자고도 하였다.¹⁶⁾ 이 조약의 근거에 따라 러시아는 후일 문제의 경계지역, 즉 우수리강으로부터 흥개호(興凱湖), 포시에트만,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지형조사를 감행해 나갔고 그렇게 수집된 지형 정보를 토대로 지도를

15) H. M. Morse, *The International Chinese Empire Vol. 1. (The Present of Conflict 1834-1860)*, 1927; 김경춘, 『앞의 글』, 178쪽(재인용하면서 러시아측 조약 원문을 대조하였음). 러시아측 원문은 다음을 보시오.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договор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1689-1916*(1689~1916년의 러·청조약문집) (М.: Памятники 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2004), с. 62-63.

16)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ibid.*, p. 67.

작성하여 후일 청국과의 국경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끄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조·러간 국경획정과 조선의 대응

(1) 조·러간 국경획정과 조선의 배제

1860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북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동북지역의 양국 국경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양국의 국경선은 우수리강과 송화강을 거쳐 홍개호로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두만강(р. Тумень, Тумьньцзян) 하구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두만강을 경계로 조·러간의 국경역시 확정된다.¹⁷⁾ 이때 러시아는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연해주에 붙어버린 삼각주 섬 녹둔도를 자국에 편입시켜 버렸다.

러시아는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접경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청은 우수리강 이동지역과 뽀시에트만을 잃어 바다로 향하는 출구를 완전히 봉쇄당하여 내륙에 고립되게 되었다. 조선은 두만강 하구 부분에서 러시아와 16.5km에 이르는 국경선을 접하게 됨으로써 연해주와 간도 일대에 대한 청국의 주장에 우선권을 잃어갔다. 반면에 청나라는 러시아와 국경관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조선이 주장하는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러시아의 동조를 얻게 되는 부수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어찌 보면 최대 피해자는 청이 아닌 조선이었다. 조선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경이나 영토에 대한 근대적 개념에 일찍 눈뜨지 못한 점에 있다. 외교권을 청에 의존했던 경직된 중화론적 사고는 조선 정부로 하

17) 북경조약에 대해서는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op. cit.*, pp. 70-78.

여금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게 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제약하였다.

조선은 삼국간 국경선이 그어지는 협상에 참여하지도 그러한 협상이 오갔는지도 모른 채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이 국경지역을 대체하는 실상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청국조차도 조선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주지도 않았다. 조선 정부가 조·러간의 국경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것은 겨우 두만강 대안에서 청·러 양국 관리들이 국경경계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이다.

청국과 러시아는 북경조약의 조약문상에 나타난 미확정 경계구간, 즉 홍개호 동쪽에서 두만강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 “계표를 세워 국경 경계를 확정하도록 위원을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¹⁸⁾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청측 대표 성기(成琦)와 러시아측 대표 까자케비치(П. В. Казакевич, 연해주 군무지사)는 1861년 6월 28일 경계비를 설치하자는 홍개협약을 맺어¹⁹⁾ 우수리강에서 도문강(두만강) 하구까지 양국국경 구분 작업을 마친 후 조선을 포함한 삼국간의 실질적인 경계와 점유 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이 합의한 경계비는 러시아와 중국 글자로 계표 양면에 각각 붉게 새겨 넣은 목재 비문 8개(K(喀)字, И(亦)字, E(耶)字, Л(拉)字, Н(那)字, O(倭)字, П(帕)字, T(土)字)로 준비되었다. 경계비의 명칭과 설치 장소 그리고 지도는 <표 1>, [그림 1]과 같다.

청과 러시아 관리들은 국경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확인된 지역에 목재 경계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두만강 우안지역 제일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국경경계비인 토자비(土(T)字碑)를 설치하기 위해 러시아 선견대가 천막을 치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경흥군 무이보 망덕산의 봉수장 김대흥이 이를 목격하여 부사 이석영에게 보고하였다. 경흥 부사 일행은 필담으로 청국 관리가 훈춘과 영고탑 등지에서 16명 그리고 러시아 우수리국경위원회(Уссурийская пограничная комиссия) 소속의 관리 13명(단장, 푸르빈

18)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op. cit.*, p. 72.

19)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ibid.*, pp. 81-83.

<표 1> 경계비의 명칭, 설치 일자 및 위치

비(碑)	설치 일자	위 치
K(喀)字	1861. 5. 20	송아찰 좌안의 토양이하구
И(亦)字	1861. 6. 12	우수리강구
E(耶)字	1861. 6. 6(양 7. 13)	송아찰하(松阿察河) 서안
Л(拉)字	1861. 7. 4(양 8. 9)	밀봉산 남쪽 소만수산
H(那)字	1861. 7. 4(양 8.9)	횡산(橫山)이 만나는 곳
O(倭)字	1861. 7. 22(양 8. 27)	호포도하구(湖布圖河口)
П(拍)字	1861. 7. 22(양 8. 27)	호포도하구 산정
T(土)字	1861. 8. 1(양 9. 5)	두만강 좌안 거해(距海) 46리

출처: 노계현, 『조선의 영토』(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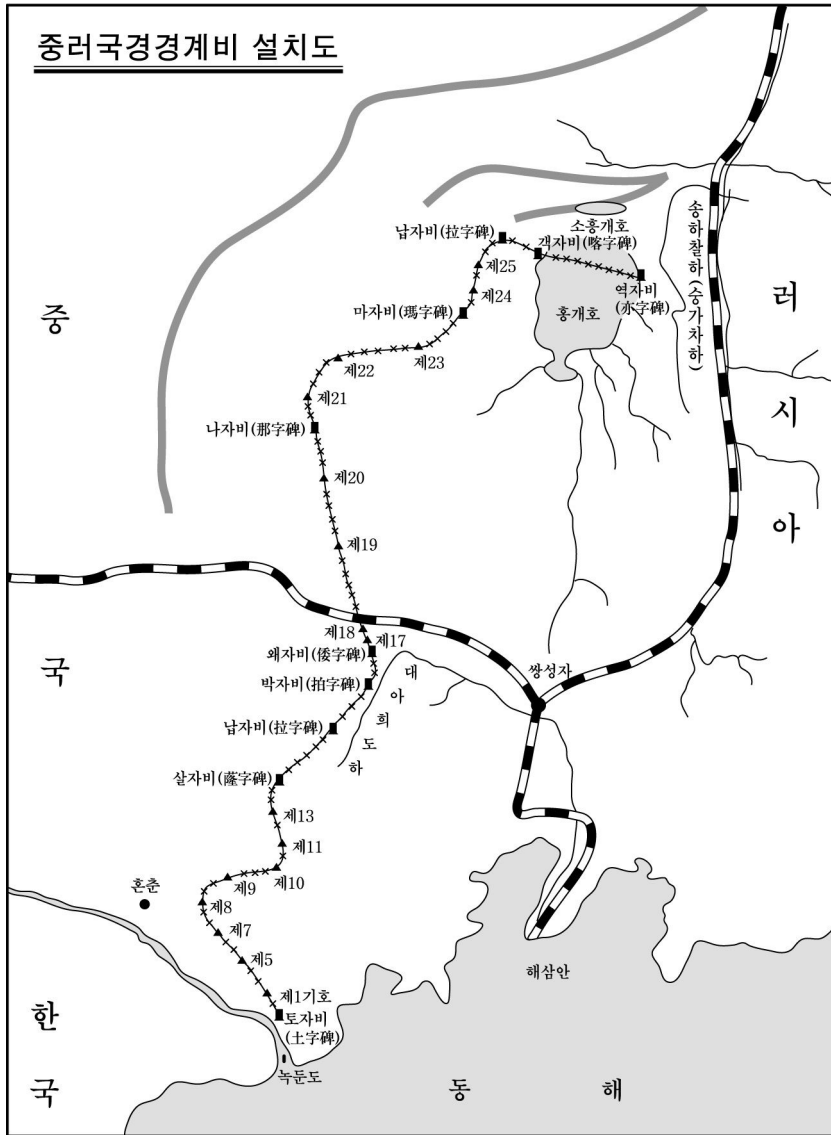
1세, Турбин I-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각각 도착하여 북경조약과 홍개협약에 따라 국경표시를 위한 경계비 설치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⁰⁾ 이에 경흥 부사는 조약문 내용²¹⁾을 필사하고 사건 전말을 북병사를 통해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은 국경 설정이 자국의 참여없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조선 정부가 특별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은 없다. 당시 조선 정부는 세도정치에 지쳐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여서 국경문제와 같은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만한 통치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상황이 불리했던 것은 국경협상의 주체인 청국이 자국의 권리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외교적으로 몰려 있던 청국은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파기

20)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전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1861년 이전)」, 『한로관계 100년사』(서울: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45쪽.

21) “Записка о действиях Уссурийской пограничной комиссии с 16(28) июня 1861 г. до окончания постановки границы”, *АВПР Ф. чиновник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части при Приамурском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е, 1882-1884, Д. 319. Л. 310~312*; 3 *Матусовский,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и* (СПб, 1888), с. 2~3; Борис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79), с. 35.

[그림 1] 한·중·러 삼국간 경계비 설치도



출처: 「자유공론」 1994년 4월호; 노계현, 『앞의 글』, p. 106.

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형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북경조약 체결을 강압해 오자 이를 제지할 힘이 없었다. 청은 오히려 북경조약으로 단순히 우수리강 이동지역을 상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해로 진출할 출구를 완전히 상실당할 실정에 있었다. 청국으로서는 두만강 유역의 마지막 경계비인 토자비를 두만강 하구에서부터 20 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두만강 하구 바로 그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국이 타국-조선-의 입장, 즉 연해주나 최소한 녹둔도에 대한 영토주권적 입장을 대변할 여유는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측은 고압적 자세로 대하면서 북경조약 원안대로 실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청측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오히려 청국으로서는 조선에 대하여,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정으로 공인받은 '위서압록(爲西鴨綠)' 지역, 즉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에 이어, 북경조약으로 '위동토문(爲東土們)' 지역, 즉 동간도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조선정부는 자국의 국계를 정하는 중요한 회담이나 경계비 설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선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무기력했다 하더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 청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국의 이익을 옹호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국의 무성의와 러시아의 완강한 입장에 따라 조선의 지위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강대국의 흥정으로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이다.

(2) 녹둔도의 귀속과 실지 회복을 위한 조선의 대응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여 조선이 변방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천혜의 전초기거였다. 이곳은 외적이 동해안을 통해 해로로 원산까지 직행할

수 없도록 방어할 수 있는 최후 보루선이었다. 따라서 녹둔도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조선 선조는 예부터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하고 목책을 치는 등 방비에 힘썼다.²²⁾ 6진이 설치된 함북지방의 경흥군에 속하는 녹둔도는 관내에 설치된 조산보(造山堡)가 두만강 대안지역의 삼각주 섬 녹둔도(鹿屯島)를 관할하고 있었다. 녹둔도에 거주하는 조선인 주민들 역시 상당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북방지역이 봉금지대로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오랫동안 안정이 유지되어 오자 녹둔도 일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다.

그러나 대체로 1800년대 초(순조~헌종기) 강류가 변하여 러시아측의 지류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자 토사가 퇴적되어 육지와 연결된 상태로 되어 버렸다.²³⁾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북경조약을 맺어 두만강 하천을 경계로 조선과의 국계를 획정했으며 녹둔도에 대한 역사적 연원이나 귀속 여부를 고려치 않거나 무시한 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버렸다.

그렇다면 손쓸 틈도 없이 국경이 설정되어 영토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조선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 국교수립과 같은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은, 일부의 주장처럼,²⁴⁾ 화이질서에 순응하여 소극적으로 임했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적극적이었는가.

이에 대해 조선은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벌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시 청나라와 영국이 공리의식을 유포하여 조선은 러시아를 경계하고는 있었지만 조선은 자국 유민의 월경과 연해주 정착 그리고 통상 문제 등 쌓여가는 국경현안을 해결하자고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하는 러시아와의 협상에 적극 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경흥협상’이라고 알려진 양국간의 이주민 대책협약이 1864년 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면 성과였다.²⁵⁾

22) 선조 20년 이순신은 추수기 양곡탈취를 위해 침입한 호적들을 물리친 전과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양태진, 『한국의 국경연구』(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142쪽.

23) 양태진, 『위의 글』, 253쪽.

24) 秋月 望, 『朝露國境の成立と朝鮮の對應』, 『國際學研究』第8號, 1991, 29-30쪽.

25) 경흥협상에 대해서는 B. Д. Пак, *Корей цы в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 (Иркутск, 1994), с.

조선이 러시아와의 국경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청국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 러시아에 국경문제에 대한 특별조치를 요구한 흔적은 없다. 다만 근 20년이 지나 임오군란을 겪은 고종이 왕권 강화와 함께 변경의 군사력을 확충할 필요를 느끼면서 조선의 국경, 특히 북방 변경 지역의 주민 실태와 영토문제에 그리고 실지 녹둔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어윤중(魚允中)에게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청국과 새로운 통상협상에 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북방 변경지역에 대한 지형을 극비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²⁶⁾

어윤중은 특별 어명에 따라 두만강 녹둔도를 조사하는 등 변경지역 조사를 마친 후 1882년 10월에 귀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²⁷⁾

녹둔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으로서 신이 조산에 도착하여 지형을 살펴보니 섬 동쪽에 모래가 쌓여 저쪽 땅과 연결되어 있고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며 다른 민족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윤중의 보고내용은 녹둔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이며 조선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20여 년 전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토 편입으로 조선에서 분리된 채 존재하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즈음 1883년 청과 러시아는 양국 국경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흥개협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어윤중은 청측 대표를 통하여 녹둔도 반환문제

27-28; 썸비르제바 따찌아나, 「1869~1870년간에 진행된 러시아와 조선 간의 경협협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7-21쪽.

26) 녹둔도에 대한 지형도(俄國輿地圖(鹿屯島圖))가 극비리에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녹둔도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경비와 병영화를 추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녹둔도 섬의 주민은 모두가 조선인이었으나 인구수에 대한 추정은 70~80명에서 800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양태진, 1990, 『韓國邊境史研究』(서울: 범경출판사), 244-249쪽.

27) “此本我國之地，而臣到造山，查看地形，島東爲流沙所積，與彼地連界，而島中居民，皆本國之民，更無他族矣”。從政年表(三) 高宗 20年 癸未 10月 18日條; 김경춘, 『앞의 글』, 193쪽.

를 러시아에 제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청측으로부터 묵살당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녹둔도 반환에 대한 입장을 러시아측에 제기하였다. 그 정황은 1883년 10월 13일 연해주 군무지사는 경흥 부사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고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편지는 국경수비대장 마쭈닌을 통하여 전달한 서한(N. 9568)을, 러시아측 입장에서 볼 때 “논쟁의 여지없이 러시아에 속하는 지역”, 즉 녹둔도를 반환해 달라는 경흥 부사의 요청서 요약문을 첨부하고 있었다.²⁸⁾ 조선 정부의 녹둔도 반환 의지는 러시아와의 외교통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방관리인 경흥군 부사를 통하여 적극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해주 군무지사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 및 조선측의 녹둔도 반환 요청서 사본은 [그림 2]와 같다.

우리 조선의 중앙관료(어윤중-필자)는 본래 조선에 속했던 녹둔지(끄라스노예 쉘로)라는 지역을 조선에 양도할 가능성에 대해 청측 관리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간 국경선 분계 과정에서 상기한 지역이 러시아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땅이 자국의 잘못도 없이 제 3국으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과 분쟁 법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수비대장께서 우리의 제안을 검토해 보시고 귀국의 정부와 상의한 다음에 상기 지역을 우리 국가에 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녹둔지 마을은 과거에도 우리 국가에 속해 왔고 현재에도 우리 지역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양국간 우호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지방관리는 북경조약에 의해 결정된 국경이기에 이미

28) “녹둔도(둔진)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 관리의 서신을 둘러싼 시베리아 총독 및 남우수리 지방 국경 관무관과의 왕복문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이르쿠츠크 문서보관소), Ф. 24, Оп. 11-3, Д. 104, Л. 2 - 2 об(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No. RO 534).

[그림 2] 연해주 군무지사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왼쪽) 및 조선측의 녹둔도 반환 요청서 사본

가로표로 교체

출처: “녹둔도(둔전)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 관리의 서신을 둘러싼 시베리아 총독 및 남우수리 지방 국경 관무관과의 왕복문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이르쿠츠크 문서보관소), Ф. 24, Оп. 11-3, Д. 104, Л. 2-2 об(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No. RO 534).

КСИ

“의심할 여지없이” 녹둔도가 러시아에 귀속되므로 다시 “조선에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용없다.”²⁹⁾는 토를 달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조선으로 회신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진행된 불합리한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목살당하고 만 것이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1884년 5월 9일 연해주 군무지사가 또다시 국경수비대장 마쭈닌의 보고(No. 3782, “녹둔지(끄라스노예 셀로) 지역의 위치 관련 내용”)를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내어 총독의 요구사항이었던 문제지역의 위치와 지도상의 오류를 확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 국경수비대장은 녹둔도가 두만강에서 13로리 혹은 자레츠키야강에서 동북쪽 25로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그 상세한 정보를 도안과 함께 송부하였던 것이다.³⁰⁾

“논의의 여지없이 러시아에 속하는 지역을 조선에 양도하는 데에 관한 불가능하고 소용없는 문제제기의 원인이 되는 녹둔도 마을”이라는 보고내용(No. 3782)을 보면, 러시아측의 기본적인 한·러 국경 내지 녹둔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면서도 그들이 곧바로 조선에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아니 어찌 보면 러시아측에서는, 비록 더딘 형태이나, 조선측이 제기한 녹둔도 반환건을 계속 추적하여 혹시 있을 협상에 대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조선이 자국의 북방 국경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정부는 ‘중앙관료’를 통한 공식 경로보다는 지방관리, 즉 경흥부사를 통하여 청나라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에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는 최선책을 택했던 것이다. 즉 영토문제에 관한 한 조선 정부는 결코 전통적인 화이질서에 안주하여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러외교를 감행했다고 판단된다.

29) ГАИО, ibid., p. 1.

30) ГАИО, ibid., Л. 4 - 4 об.

그러나 그로부터 2달이 지난 1884년 7월 초 조선과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는다. 러시아의 한반도내 부동항(당시 영흥만-필자) 확보의 필요성과 러시아를 끌어들이 여타 서양제국이나 일·청의 간섭을 견제하려던 조선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선은 러시아에 대하여 녹둔도 문제를 수교 협상과정에서 정식으로 제기한 흔적은 없다.³¹⁾

4.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과 영토주권 강화 활동

(1) 태평양 함대의 군사력 증강

북경조약이 러시아에게 주는 의미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러시아의 영토가 두만강과 동해까지 확대되어 동북아 국제관계에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전력을 새로운 영토로 확보된 극동지역으로 돌려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부문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상통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전력은 발트 함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극동지역에도 시베리아 소함대(Сибирская флотилия)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겨우 중형기선 3척이 함대전력의 전부였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군사개혁을 계승한 알렉산드르 2세는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군사개혁을 강화해 나갔다. 육군상 밀류틴을 중심으로 추진된 러시아 군사개혁의 목표는 해군력을 양성하여 러시아 전력을 유럽 제3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었다. 러시아의 군개혁은 어느 정도 성취를 가져와 1880년경 발트함대는 장갑함 2척과 순양함, 포함 등 28척 규모의 함대로, 시베

31) В. С. Мясников(ред.), *op. cit.*, pp. 167-168.

리아 소함대는, 비록 6척의 수뢰정뿐이지만 해군 전력을 상당히 확충하는 성과를 가져왔다.³²⁾ 특히 시베리아 소함대는 1900년까지 포함 8대를 추가로 건조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어 극동지역 러시아 해군 전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할 즈음 러시아 정부는 극동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시베리아 소함대를 태평양함대(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로 확대 개편시켜 그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에 상응한 해군전력을 갖추어야 할 과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했다. 마침 1895년 4월에 개최된 “태평양함대 증강 5개년계획 심의회”는 일본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극동해군력을 증강시킬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³³⁾ 함대 편성은 장갑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발트함대의 군함을 이동시키거나 추가로 건조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태평양 함대는 4척의 장갑함과 8척의 순양함 그리고 8척의 포함 등을 갖추게 되어 극동의 해군전력이 청·일에 이어 영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지게 되었다.³⁴⁾

<표 2>는 청일전쟁 직후 극동지역 열강들의 해군 군사력을 비교한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러시아 해군전력이 급상승한 데에는 러시아 정부의 군전력 예산을 증액하고 건함건조 계획에서 성과를 얻는데 힘입은 바 크다.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동북아의 중심세력으로 일본이 급부상하자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는 군전력 강화와 더불어 극동지방의 해안과 해양에 대한 탐사활동을 시켜 나갔다. 이는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자연스러운 행위 중의 하나였다.

32)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ю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госуда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го, Том 1. 1696-1941 (М., : ТЕРА, 1996). с. 163.

33) РГА ВМФ(러시아해군부 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1467, Л. 27-38 об.

34) T. A. Brassey, The Naval Annual Portsmouth: Griffin, 1894-1895; 문희수, “국제관계에 있어서 청일전쟁(1894~95)에 관한 지도와 통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1호, 2002, 320쪽; С. П. Моисеев, Список кораблей русского парового и броненосного флота, с. 24.

<표 2> 청일전쟁 전후 극동지역 세계 열강들의 해군군사력 비교
(1894. 8~1895. 5)

각 국		장갑함	순양함	포 함	합 계	順位
청	전	4	13	63	80	1→1
	후		6	51	57	
일 본	전	1	10	17	28	2→2
	후	2	17	28	47	
영 국	전	2	6	12	20	3→3
	후	2	9	14	25	
러 시 아	전	1	7	4	12	4→3
	후	4	8	13	25	
프 랑 스	전	1	1	3	5	5→5
	후	1	5	4	10	
미 국	전		1	3	4	6→6
	후		4	4	8	
독 일	전			2	2	7→7
	후		4	1	5	
이탈리아	전			2	2	7→7
	후		3	2	5	

출처 : T. A. Brassey, The Naval Annual Portsmouth: Griffin, 1894~1895;
 문희수, “국제관계에 있어서 청일전쟁(1894~95)에 관한 지도와 통계”, 『한
 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1호, 2002. 320쪽(필자 순위 재구성).

(2) 두만강 국경지역 및 동해안 해역 탐사 강화

러시아는 북경조약이 맺어지기 이전, 즉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일부를 차지하여 동아시아 국가 일원이 되기 이전부터 연해주와 한반도 그리고 동해 해역 등 극동지역에 대한 탐사활동을 매우 활발히 진행시켜 왔다. 이때 수집된 정보가 러시아의 대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러시아 군함이 한반도 동해안 등에 출현하여 해양정보를 수집한 기록은 탐사목적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활동 결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양국가와의 통상과 군사지리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항해했다가 부수적으로 동해안 일대를 탐사한 경우이다. 둘째로는 러시아 해군 내지 해양부 수로국이 동방 해안 일대를 정기 탐사한 경우이다. 전자는 러시아가 동아시아 국가와 수교관계를 맺기 이전에 집중된 활동으로서 통상과 영토확장이라는 내적목표에 따라 실시되었다. 따라서 그 시기는 대체로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할양받기 이전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여 동해의 북부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한 이후 자국 해안선에 대한 탐사활동에 집중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첫째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1803년 일본과의 통상교섭을 위해 라자레프 일행을 통상사절로 파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통상 교섭 이외에도 일본과 조선간 국제관계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귀국시 대마도해협과 동해안을 거쳐 회항하였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한반도 동해안에 관심을 둔 탐사활동은 1854년, 뿌짜찐을 함장으로 한 기함 <빨라다>호, <보스톡>호가 청, 일본과 통상수교를 위해 파견된 이후였다. 이번의 출항은 러시아 정부 내에 구성된 '극동정책 기본문제 심의 위원회'가 결정내렸는데,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서양국가들이 무력을 앞세워 청, 일본과 수교하려 한다는 첩보가 수집되자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상관계를 맺으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³⁵⁾ 그러나 이들 역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회항하고 말았다.

그러나 뿌짜찐 일행은 회항 도중 한반도 거문도와 동해안 일대를 둘러보고 갔다. 이때 러시아 함대 일행은 한반도 남단의 거문도와 함경도 안변, 영흥(송전만, 라자레프항) 등을 거쳐 북상해 갔는데, 특기할 사항은 이들이 동해안 해안을 탐사하는 도중 울릉도와 독도를 실측하여 기존의 지도를 대폭 수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이다([그림 3] 참조). 이때 수집한 한반도

35) E. Фриш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97-1877 гг. (М., 1960), с. 143-144.

관련 정보는 서양에 한반도가 중요한 군사지리적 가치를 지닌 요충지임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해양탐사 활동은 니벨스코이의 탐사원정대 활동과 같이 영토확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실시되었다. 1850년 8월 당시 동부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가 파견한 니벨스코이 탐사 일행은 아무르강을 따라 극동 내륙지역으로 들어가는 수상경로를 개척하였고 더 나아가 초소 설치와 러시아 국기 게양을 통해 사할린과 두만강에 이르는 연해주를 자국 영토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이다.

두 번째 유형의 해양탐사 활동은 우선적으로 자국 영토 및 국경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자국의 지배영역을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 이루어졌다. 1886년 4월말에서 5월초 쾌속범선 <크레이세르, Крейсер>호가 러시아 남동 국경지역에서 한반도 동해안에 이르는 해양에 대한 수로탐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크레이세르>호는 자국의 남동 국경지역인 뽀세이트만에서 조선과 국경을 공유하는 두만강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동해안 불전곶(위도 40° 39' 32", 성진 근처-필자)을 탐사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해인 1887년에는 <시부치, Сивуч>호가 두만강 일대를 조사하였다. <시부치>호는 두만강 하구로부터 20km가 떨어진 지점, 즉 한·러 국경 경계비인 토자비(土字碑)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까지를 수로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 민속자료까지 수집하였다.³⁶⁾

이때 탐험장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충분

36) “Ведомость об успехе гидрофических работ”, *Отчет о дей ствиях Главного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 1887 год*, СПб, 1890, с. 83-84, 92. 그 중요성에 비춰 좀더 탐사대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반도 해안에 관한 정보는 <크레이세르>쾌속범선이 수행하여 수집된 정보의 경우 1888년 러시아 수로국의 <수로학지, Записок по Гидрографии> 제1호에 그리고 <시부치>호가 탐사 활동하여 수집한 한반도 해안에 관한 정보는 1888년에 발간된 러시아 수로국의 <수로학지, Записок по Гидрографии> 제2호에 잘 전달되어 있다. 이 자료가 한반도 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1854년 기함 <뿔라다>호가 작성한 한반도 해안 관련 정보는 1888년 작성된 자료에 비하면 피상적인 내용만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히 밝혀졌다. 두만강, 하구에서 상류쪽 20로리 위치까지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알려진 사실보다도 더 풍부해졌다. 이 지역에 대한 수로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정보가 더 수집되었다. 특히 두만강과 가쉬케비치만이 만 상부에 위치한 호수를 통해 직접 합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주의 항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만주에서의 연안무역을 두만강의 위험한 지역을 지나 만주로 항해해 들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³⁷⁾

한편 러시아 해군의 해양 탐사활동은 크게 연안탐사대와 해양탐사대 등 2개조로 나뉘어졌는데, 이들의 활동규모와 활동내용을 보면 당시 러시아 해군이 해양 탐사활동에 어느 정도 큰 비중을 두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1887년의 경우 연안탐사대는 4월에서 10월까지, 즉 바다 여름이 어는 겨울 혹한기를 피한 해빙기에, 연 선박 약 30여 척을 동원하여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양탐사대는 동시기 약 세 차례의 탐사원정을 떠났다.³⁸⁾

1888~89년에 실시된 해양탐사 작업에는 블라디보스톡을 껴안고 있는 뽀뜨르 벨리끼이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성 프라이즈만에서 꼬라베 반도까지의 지역 윤곽을 보다 선명하게 작성했으며, 사할린 인근의 주요 도서에 대한 탐사를 추진하였고 해안가의 항해에 위협을 주는 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그 후에도 추가로 이루어져 뽀뜨르 벨리끼이만 지역에 대한 탐사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해양탐사대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져 뽀시에트만의 가모프 곳에서 두만강까지에 대한 자세한 지형도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그리고 녹둔도를 포함한 한·러 경계 지역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선명한 윤곽을 촬영하는 작업이 보다 정밀하

37) Ibid. c. 91.

38) 탐사활동에 참여한 연인원은 전체 123명이었다. 연안탐사대 구성을 보면 영관급 탐사대장 1명에 위관급 장교 6명, 일반공무원 1명, 부사관 2명 그리고 일반 병사 44명의 총인원 54명으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해양탐사대의 경우 영관급 장교 1명에 위관급 장교 5명, 군의관 1명, 부사관 8명 그리고 일반 병사 54명의 총인원 69명으로 구성되었다. Ibid. c. 90.

[그림 4] 1894년 러시아 해군함대의 원산일대 탐사지도

가로표로 교체

출처: 러시아 해군성이 1984년 원산항을 탐사한 보고서, РГАВМ(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924, Л. 233.

КСИ

게 진행되었다. 이 작업에는 태평양 함대의 선박과 보다 발달된 과학기술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³⁹⁾ 참고로 [그림 4]는 1894년 러시아 해군함대가 원산일대를 탐사하고 작성한 지도 역시 그 정확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탐사작업의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해안을 정밀 조사했다는 것에 있다. 이 작업에는 주로 태평양 함대의 선박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브로우톤만 일대 해안에서 모이시예프 곳까지에(대한해협에서 진해만 사이-필자) 대한 탐사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1887년 육군 중령 베벨(Вебел)이 탐험한 경로를 따라 촬영한 자료가 있으나 내해 윤곽이 너무 깊게 보여져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중령 안드리에프가 지휘하는 <고르나스타이, Горностаи>호가 독자적인 촬영 작업으로 진행되었다.⁴⁰⁾

러시아의 해양 탐사활동은 그 범위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러 국경을 나누는 두만강 일대 그리고 동해안을 타고 남하하여 진해만 등 남해안을 살펴보는 탐사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럼으로써 동북아시아로 확대된 자국의 영토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더욱 굳혀 나갈 수 있었다. [그림 5]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7월 러시아연해주 군관구가 작성한 한·러 국경지역 지도이다. 국제표시와 녹둔도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

39) 이번의 해양 탐사활동에는 발달된 기술이 도입되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지형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삼각측량 방법이 도입되어, 이전의 작업들이 표시판도 없이 측량함으로써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1887년 <비짜시, Витязь>호가 실시한 탐사활동에는 삼각측량 기법이 도입되어 보다 정확하게 이전의 자료를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해안가 산맥과 산 정상에 대한 측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정상부의 정확한 위치나 그에 대한 좌표(координат)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어 측량된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Ведомость об успехе гидрофических работ”, *Отчет о дей ствиях Главного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 1889 год*, СПб, 1892, с. 89.

40) “Ведомость об успехе гидрофических работ”, *Отчет о дей ствиях Главного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 1892 год*, СПб, 1894, с. 84.

[그림 5]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이 작성한 한·러 국경과
녹둔도지도

가로표로 교체

출처: РГА ВМФ(러시아해군성 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924, Л. 233.

КСИ

5. 맺 음 말

러시아 해군의 해양 탐사활동이 확대된 것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급변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1894~95년에 발생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패권구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급성장은 이제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세력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지나친 전쟁 배상 요구는 결국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일본의 대만주정책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덕분에 러시아는 남만주를 조차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아관파천을 적극 수용하여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러시아는 극동정세에서 자국의 이해와 위상에 따라 국경문제에 상이하게 대처하였다. 러시아가 만주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토문강이 압록강에서 송화강으로 흐르는 지류’라고 하여 만주지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조선측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러시아가 남만주를 조차한 이후에는 두만강, 헤산산맥을 경계로 한다고 하여 이제는 조선으로부터 만주를 자국 러시아로 분명히 떼어내었다.

1904~05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 인식을 또다시 바꾸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전쟁 중에 한일의정서를 맺어 용산이나 독도와 같은 지역을 군용지를 마음대로 강탈해 가고, 심지어는 을사조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마저 빼앗아가자 패전국 러시아는 ‘간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의 영토’라는 애매한 태도를 지녔고 1907년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이 맺어지자 조·청간의 국경이 두만강 경계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남만주 철도부

설권을 묵인 받음과 동시에 간도 소유권을 청에게 넘겨줌으로써 일본의 대륙침략 의도를 눈감아 주는 흥정을 벌인 결과였다. 러시아, 청, 일 3국은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 조선의 국경을 마음대로 긋고 바꾸는 정치 외교적 흥정을 일삼았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국경은 조선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흥정에 따라 획정되었다. 그 과정에 녹둔도와 같이 엄연히 조선의 점유지였던 영토마저 러시아에 귀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선 정부는 화이질서 속에 국경 내지 영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러시아 문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이다.

한·러 양국간 녹둔도를 둘러싼 그리고 더 나아가 연해주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역사주권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남북간 분단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는 더욱더 제기될 소지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강대국의 흥정에 의해 녹둔도와 같은 영토를 상실하게 된 경위와 부당성을 옹기 이해하고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몫이라고 여겨진다.

(원고투고일 : 2005. 7. 27,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영토주권, 역사주권, 녹둔도, 북경(北京)조약, 동해

<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on Strategy of Russia to
the Far East and Responses of Korea and Russia
over territory(Rokdundo)

Sim, Heon-yong

A research project from 2002 on the history of North-east province in China and its historical phenomenon, what is called '東北工程', and the re-evaluation in Japan on the past history through the revision of a history textbook brought about serious and actual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st Asia. The problems created a stir in the spher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specially relating to the boundaries of the Korean Peninsula, Gando bet. Korea and China, Dokdo bet. Korea and Japan.

At the present, there seems no actual problems on the land and the past history bet. Korea and Russia. But the national boundary line bet. them was demarcated according to Peking's Treaty in 1860, and Rokdundo(鹿屯島) was reverted to Russia without presence of Chosun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an exploration into the territorial question about Rokdundo, this study, above all, concentrates on the process of the territorial expansion to Siberia, Far East, especially from R. Amur to R. Tumen, and the demarcation course of the national historical aspect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Russia's policies after the demarcation of the national boundary, that is, how to strengthen it. Russia has driven a scheme of enlarging military power and increasing fiscal amount on the Pacific

fleet. And Russia has pushed up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on the areas of the national boundaries with Korea and the coast and ocean near the East Sea(東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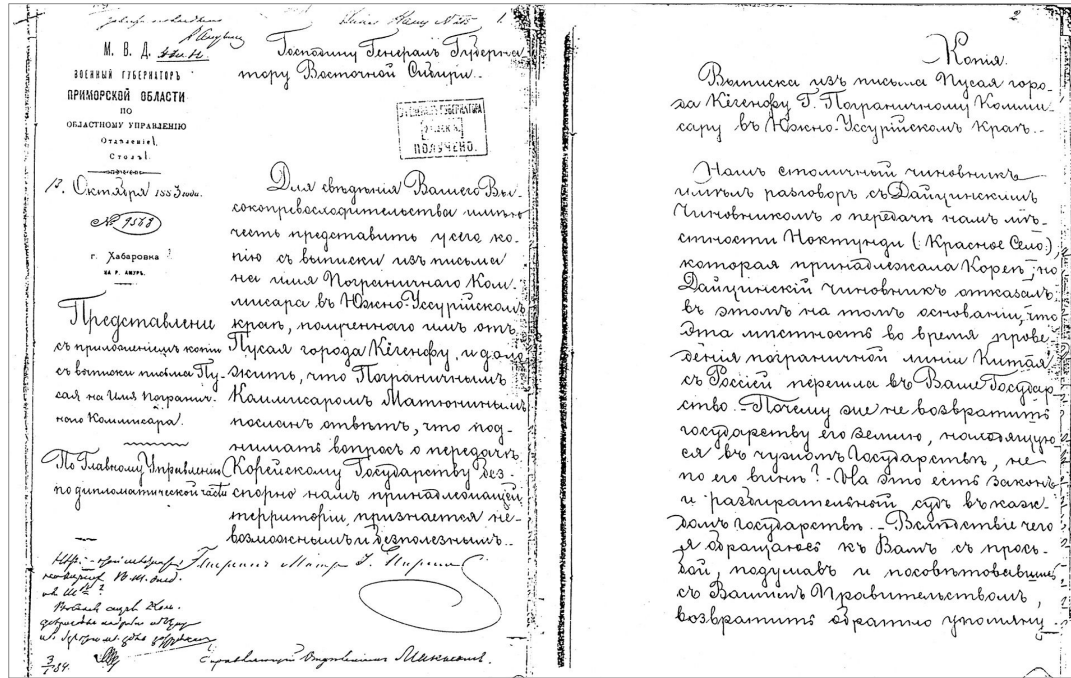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Russia has tried to deal in the area with other neighbor powerful countries, which is no other than an imperialistic expansion, like Gando. Russia, China and Japan transacted the national lines at will with the absence of Chosun.

At the present, the territorial problem over Rokundo, which is territorial and historical sovereignty, is not revealed. Nevertheless it is left to us to understand historical process and impropriety of the territorial loss and to re-evaluate properly the historical means.

Key Words : Territorial sovereignty, Historical sovereignty, Peking's Treaty, Rokundo, The East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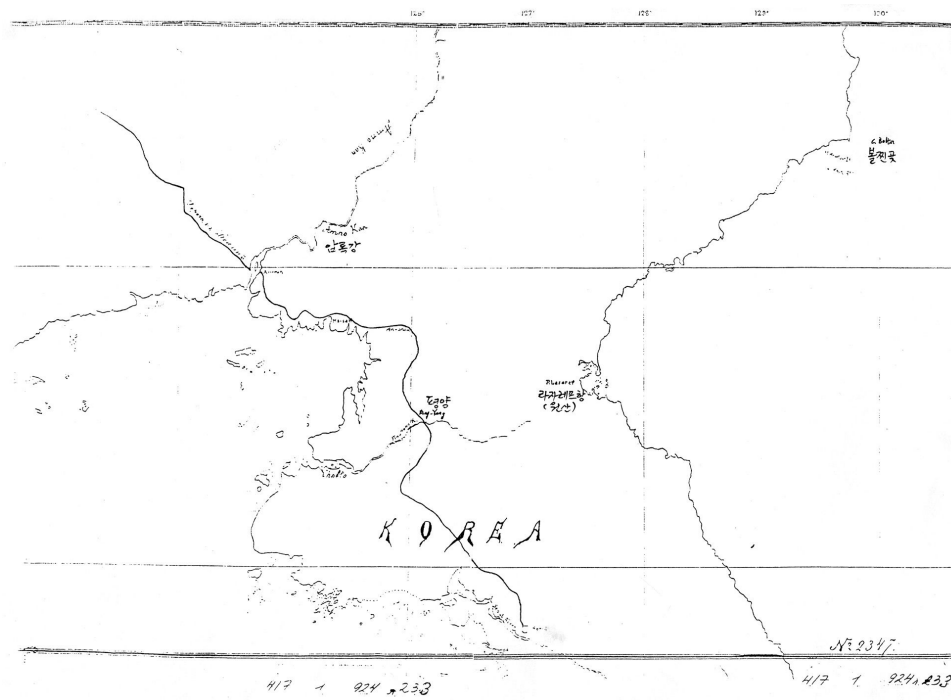
K C I

[그림 2] 연해주 군무지사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왼쪽) 및 조선측의 녹둔도 반환 요청서 사본



출처: “녹둔도(둔진)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 관리의 서신을 둘러싼 시베리아 총독 및 남우수리 지방 국경 관무관과의 왕복문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이르쿠츠크 문서보관소), Ф. 24, Оп 11-3, Д. 104, Д. 2-2 06(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No. RO 534).

[그림 4] 1894년 러시아 해군함대의 원산일대 탐사지도



출처: 러시아 해군성이 1894년 원산항을 탐사한 보고서, ПГВИА(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924, Л. 233.

[그림 5]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이 작성한 한·러 국경과 녹둔도지도



출처 : РГА ВМФ(러시아해군성 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924, Л. 233.